

제 704 호

1979. 3. 2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정상천

편집장 : 문화공보관 김인동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보

차례

◎ 조 례

제 1320 호 :	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.....	3
제 1321 호 :	서울특별시청소년직업학교수강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.....	4

◎ 고 시

제 115 호 :	도시계획사업(양묘포지조성)실시계획인가.....	4
제 117 호 :	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및지적승안.....	11
제 118 호 :	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안.....	12
제 119 호 :	도로교통법에의한통행제한고사.....	12
제 120 호 :	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지적승안.....	14
제 121 호 :	관리처분계획인가.....	15
제 122 호 :	도시계획시설(수도)결정.....	16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1443

제 123 호 :	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 실시계획인가	16
제 124 호 :	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	17
제 125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및지적승인	17
제 126 호 :	도시계획시설 (공공공지) 결정및지적승인	18

◎ 공 고

제 69 호 :	주택개량제개발사업건축계획공람공고.....	19
제 77 호 :	연료사용기기제조업허가취소.....	19
제 78 호 :	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품수거또는수거파기명령 (처분) 공고.....	20
제 79 호 :	영동제 1 지구및영동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공람공고.....	22
제 80 호 :	일단의주택저조성사업시행허가준공.....	22
제 81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확장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	24
제 85 호 :	소공제 1 지구제개발사업완료범위변경공고.....	28
제 86 호 :	도시계획사업 (공원, 도로광장조성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	29
제 87 호 :	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품수거및파기명령 (처분) 공고...	30
제 92 호 :	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계획공람및관리처분계획 (변경) 공람공고.....	30
제 94 호 :	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.....	31
제 20 호 (강서구공고) :	공인개각공고.....	32
제 30 호 (강서구공고) :	공인개각공고.....	33

◎ 정 정

조 **례**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9. 3.17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320 호

서울특별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
조례 중 개정 조례

서울특별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 (직무)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행위 중 학습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9 조 내지 제 3 호에 규정된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행위와 동조 제 4 호 내지 제 7 호에 규정된 업 및 숙박영업법의 규정에 의한

- 호텔, 여관 및 여인숙영업
2. 극장, 총포 파악류의 제조장 및 그 저장소, 압축에스의 제조장 및 그 저장소
3. 오물청소법 및 동부속법령의 규정에 의한 오물수집장소, 쓰레기종말처리장
4. 공중목욕장 휴게실
5. 전염병원, 전염병 격리병사 또는 개리소 전염병요양소 및 진료소
6. 노집행상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학습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행위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 수강로정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9. 3.17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321 호

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
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 수강료
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 (징수금액) 청소년직업학교장
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강자
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15 호

도시계획사업 (양묘포지조성)
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제 146(75.9.3)호로
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(양
묘포지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
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
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

동법시행령 제 27 조 및 건설부고시
제 41 호 (77.3.18)에 의하여 이를
고시함.

2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
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는
이 고시로 갈음함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녹지국
녹지과 및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
치함.

1979. 3. 14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의 위치 : 서울특별시성동
구군자동 204 외 48 일대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종류 - 녹지시설
명칭 - 양묘포지
조성
3. 사업규모 : 33,760 평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착공및준공예정일 : 79.3
인가일 : 79.12.31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
지 : 별첨
7.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
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,
성명 : 별첨토지조서

토 기 조 서						
순위	소재지	지 번	지목	지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	송정동	73-43	답	198평	송정동 325-7	최 윤 수
2	"	"-68	"	752	도선동 45	이 효
3	"	"-79	"	48	"	"
4	"	"-85	전	716	제 무 부	"
5	"	"-86	답	372	송정동 325-7.	최 윤 수
6	"	"-104	"	21	능동 357-1	김 학 균
7	"	"-118	"	260	"	"
8	"	"-119	"	172	"	"
9	"	"-120	"	60	군자동 54	김 조 남
10	"	74-18	"	9	"	"
11	"	"-267	"	9	화양동 73	박 지 순
12	군자동	204-48	계	31	동양척식주식회사	"
13	"	"-49	답	360	남가라동 155-205	강 천 만 수
14	"	"-50	"	136	군자동 325-7	최 윤 수
15	"	"-56	"	139	국 세 청	"
16	"	"-57	"	751	송정동 72	김 권 석
17	"	"-58	"	53	도선동 45	이 효
18	"	"-59	"	114	남가라동 155-205	강 천 만 수
19	"	"-60	"	94	군자동 325-7	최 윤 수
20	"	"-70	"	379	남가라동 155-205	강 천 만 수
21	"	"-71	"	55	군자동 325-7	최 윤 수
22	"	"-72	"	322	능동 357-1	김 학 균
23	"	"-73	"	594	군자동 165	최 선 균
24	"	"-74	"	433	화양동 2-34	박 인 호

순위	소재지	지 번	자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25	군자동	204 - 75	답	19	군자동 51	김 오 장
26	"	" - 76	"	190	장위동 382-29	강대실외 2
27	"	" - 77	"	353	능동 357-1	김 학 균
28	"	205 - 32	"	132	군자동 51	김 오 장
29	"	" - 33	"	611	송정 72	김 학 배
30	"	" - 55	"	45	남가라동 155-205	김 철 단
31	"	" - 56	"	408	"	"
32	"	" - 57	잡	21	점농동 227-30	박 문 규
33	"	" - 58	도	69	동양척식주식회사	
34	"	" - 61	전	67	동두천생면리 589	이 지 용
35	"	" - 62	"	451	"	"
36	"	" - 76	답	564	송정 72	김 권 시
37	"	" - 77	"	574	"	"
38	"	" - 78	도	48	국 유	
39	"	" - 79	"	58	마장동 473-11	장 안 평 농지조 합
40	"	" - 89	답	665	함정동 366-8	김 정 목
41	"	" - 90	"	915	신당동 24	오 문 성
42	"	" - 109	"	851	행당동 317	원 재 영
43	"	" - 112	"	257	냉천동 41	임 승 제
44	"	" - 200	"	254	사근동 186-4	이 종 근
45	"	" - 201	"	539	상왕실리동 1632	최 영 상
46	"	" - 202	"	408	"	"
47	"	" - 204	"	795	명륜동 2 가 215	양 창 갑
48	"	" - 205	전	102	"	"

순위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49	군자동	205-206	답	604	신당동 24	오 문 성
50	"	"-207	"	542	"	"
51	"	"-208	"	618	송정 72	김 권 식
52	"	"-209	"	614	계기동 695, 연남동 482-31	김정걸 이만수
53	"	"-210	"	546	사근동 산 56	김 안 천
54	"	"-244	"	135	농동 451-1120	한 남 교
55	"	"-245	"	144	군자동 205-245	최 학 근
56	"	"-246	전	424	동두천 생면리 650	이 지 용
57	"	"-247	대	312	신당동 247-17	이 세 호
58	"	"-248	답	329	"	"
59	"	"-250	"	583	남가좌동 155-205	강 천 만
60	"	"-251	"	591	군자 177	김 기 복
61	"	"-252	임	75	국 유	"
62	"	"-253	답	554	답심리동 307	이 용 근
63	"	"-254	"	624	"	"
64	"	"-365	대	565	송정동 7	한 수 만
65	"	"-366	답	560	원효로 2가 1-55	나 용 덕
66	"	"-367	"	102	화양동 34	윤 종 술
67	"	"-368	"	531	"	"
68	"	"-380	"	322	송정동 72	김 복 용
69	"	"-381	"	319	"	"
70	"	"-382	"	245	장위동 238-29	강대실외 2
71	"	"-383	"	625	군자동 220	표 신 봉
72	"	"-384	"	567	동촌도 10A-1R	육중권외 1

순위	소재지	지 번	지목	지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73	군자동	205-385	답	456	반포동 125-21	이강승
74	"	"-397	대	519	동소문동 234	이문일
75	"	"-398	답	594	침랑리 181-3	안외순
76	"	"-399	"	656	"	"
77	"	"-402	"	54	군자동 205-402	남중현
78	"	"-403	"	236	상월곡동 29-39	이원거
79	"	"-417	"	8	군자동 59	김철산
80	"	"-418	"	135	"	"
81	"	"-419	"	205	답심리동 85-5	김복행
82	"	"-420	"	488	율지로 6 가 23	윤옥선
83	"	"-425	"	147	화양동 132	이덕진
84	"	"-426	"	133	행당동 197	조원진
85	"	"-427	"	160	"	"
86	"	"-428	전	38	"	"
87	"	"-429	답	69	"	"
88	"	"-430	전	54	"	"
89	"	"-431	답	221	"	"
90	"	"-432	"	79	"	"
91	"	"-463	"	335	석관동 317-11	김영모
92	"	"-467	"	25	송정동 72	김진원
93	"	"-488	"	384	군자동 51	김오장
94	"	"-489	제	28	동양척식주식회사	
95	"	"-490	답	249	장위동 238-29	강대실외 2
96	"	"-491	"	129	반포동 125-21	이강승

순위	소재지	지 번	지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97	군자동	205-568	답	53	송정 72	김 권 석
98	"	"-569	구	11	국 유	
99	"	"-574	"	28	"	
100	"	"-575	답	17	신당동 111	최 윤 상
101	"	"-576	"	19	하왕심리 632	최 영 상
102	"	"-661	"	18	송정동 17	김 수 만
103	"	"-662	"	11	반포동 125-21	이 강 승
104	"	"-664	"	19	원효로 2가 1-55	나 용 덕
105	"	"-665	"	21	화양동 34	윤 중 승
106	"	"-666	"	15	송정동 72	민 만 현
107	"	"-667	"	14	송정 72	김 학 배
108	"	"-669	"	12	장위동 238-29	강대실 외 2
109	"	"-672	전	31	제기동 137-68	이 회 순
110	"	"-673	답	13	동소문 7가 22	김 형 수
111	"	"-674	"	14	"	
112	"	"-680	구	22	국 유	
113	"	"-681	답	21	자양동 225-45	최 완포 외 4
114	"	"-682	"	17	청주시 남문로 2가 15	남 궁 윤
115	"	"-683	구	22	동양척식주식회사	
116	"	"-684	답	22	사직동 80-13	육종권 외 1
117	"	"-685	"	13	송정동 72	김 학 배
118	"	"-666	"	11	반포동 125-21	이 강 승
119	"	"-687	"	7	전농 295-24	안 중 술
120	"	"-705	"	8	답삼리 307	이 용 근
121	"	"-706	"	7	"	
122	"	"-707	"	23	화양동 45	정 생 길
123	"	"-708	"	25	을지로 6가 23	윤 우 섭

순위	소재지	지 번	지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24	군자동	205-709	답	29	윤지로 6 가 23	윤 욱 섭
125	"	" -711	잡	53	정능동 227-30	박 문 규
126	"	" -713	"	14	"	"
127	"	" -714	답	25	농지조합	"
128	"	" -743	전	46	주교동 43-10	조 대 식
129	"	" -744	"	70	"	"
130	"	" -745	답	107	"	"
131	"	" -746	"	48	"	"
132	"	" -747	"	38	"	"
133	"	" -748	"	1,045	"	"
134	"	" -749	"	96	"	"
135	"	" -750	"	67	"	"
136	"	" -763	구	13	마장동 473-11	장 동 지 안 병 합
137	"	" -764	"	17	"	"
138	"	" -766	"	4	"	"
139	"	" -767	"	24	"	"
140	"	" -768	"	29	"	"
141	"	" -769	"	23	"	"
142	"	" -770	답	22	"	"
143	"	" -771	"	56	농지조합	"
144	"	" -797	"	236	능동 171	권 태 산 의 2
145	"	" -798	"	299	"	권 용 조
146	"	" -799	"	274	장위동 238-29	강대 실 의 2
147	"	" -806	잡	581	정능동 227-30	박 문 규

순위	소재지	지 번	지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48	간자동	205-807	전	291	주교동 43-10	조 태 식
149	"	"-837	잡	1	율지로 7가 69	최 영 일
150	"	"-851	답	54	행당동 196	김 영 수
151	"	"-852	전	204	석관동 317-11	김 영 표
152	"	"-867	답	100	답심리동 85-9	전 복 형
153	"	"-895	"	200	답심리 4동 1-141	김 대 중
154	"	"-1,145	구	4,612	동양척식주식회사	
155	"	"-1,146	"	34	"	
156	"	"-1,147	"	141	"	
157	"	"-1,151	"	855	"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17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('77.3.16)권한 위임사

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 1과와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이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15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 시설(학교)조사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기정	총배신학대학	관악구 사당동 220 일대	25,219㎡ (7,662명)	
변경	"	"	42,905㎡ (2,979명)	증 17,686㎡ (5,350명)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18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전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8)에 의거
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19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고
학교	덕수 중학교	중구 을지로 6가 17-2 일대	14,267㎡	
"	청구국민학교	중구 신당동 330-2 일대	21,025	
"	남산 "	중구 남산동 2가 2 일대	8,688	
"	충무 "	중구 장충동 2가 173-7 일대	12,089	
"	영희 "	중구 인현동 2가 3 일대	12,238	
"	봉래 "	중구 만리동 2가 2 일대	17,699	

위치는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19 호

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제한고시

도로 교통법 제 16 조 제 1 항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의 통행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79.3.19

서울특별시장

1. (통행제한)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은 자종별, 요일별, 시간별, 지역별로 통행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제한내용			
차종	제한시간	통행제한지역	비고
1.5톤이상 화물자동차	4.1 - 10.31 07:00 - 22:00 11.1 - 3.31 08:00 - 23:00	도심권 및 부도심권의 통행을 제한한다.	
1.5톤미만 화물자동차	4.1 - 10.31 07:00 - 10:00 18:00 - 21:00 11.1 - 3.31 08:00 - 10:00 17:00 - 20:00	상 	

나. 제한 지역의 도심권 및 부도심 권은 다음과 같다.

(1) 도심권

(가) 시청 기점 반경 5km내외와 교방 압력이 가중되는 반경 7km내외의 다음 도로와 그 지역내외 도로

제1한강교복단 - 강변 4로 - 서울대교복단 - 강변 4로 - 제2한강교복단 - 서교동 - 동교동 - 연희입체교차로 - 홍은동로타리 - 세검정 3거리 - 북악터널 - 정농입구 3거리 - 길음교 - 미아 3거리 - 철암교 - 총암동 - 홍농입구 3거리 - 과학기술연구소앞 - 뒤경동로타리 - 시조사앞 3거리 -

산업대입구 - 건동동로타리 - 설담로타리 - 사근동 - 경찰병원입구 4거리 - 성동서앞 - 한양대앞 - 성동교 - 성동교연결강변 2로 (방비교) - 제3한강교복단 - 잠수교복단 - 강변 3로 - 제1한강교복단 연결지점간

(나) 제1한강교 통행제한

제1한강교는 전 화물 차량에 대하여 24시간 통행제한 구역으로 한다.

(다) 강변 2, 3, 4로 및 제2한강교 - 서교동 - 동교동 - 연희입체교차로 - 홍은동 - 북악터널 - 정농 - 미아삼거리

리간 도로는 07:00 - 10:00 (4.1 - 10.31) 08:00 - 10:00 (11.1 - 3.31)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한다.

(2) 부도심권 (도로)
 영등포구중 도시기능외 집중 지역인 다음 도로

(가) 제1한강교 남단-구 구청 로터리-시장로터리-남도극장앞(철길)간

(나) 분래동로터리-영등포역-구 구청앞-원호처간 도로

(다) 시장로터리-영등포역간도로

(라) 구 구청앞-OB-우산국교앞간도로

2. (예외 규정)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긴급자동차

나. 제한 구역내 통행 허가증을 소지한 차량

다. 장대차를 제외한 10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
3. (정기노선 화물차량) 정기노선 화물차량은 도심권 및 부도심권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.

4. (폐지 고시)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8호(77.9.6)는 이를 폐지한다.

5. (시행일) 이 고시는 1979.4.1 부터 시행한다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0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0 호 (79.2.14)로 변경 결정된 도봉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 (77.3.16)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라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19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		2-3	30	수유동 191-6	수유동 191-33	
변경	"			"	"	"	"	폐지결정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21호

관리처분계획인가

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호(77.6.30)로 시행인가된 청계천 7가 구역 제 10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인가 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79.3.21

서울특별시장

1. 재개발사업의 명칭

청계천 7가구역 제 10지구 재개발사업

2. 시행구역의 면적 : 2,984㎡

(902.7명)

3. 시행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

소의 소재지

명칭 : 청계천 7가구역 제 10지구

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16인

대표 유 장 실

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

신당동 220

4.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의

명세

토지 2,984㎡

건축부지 2,306.4㎡

도로 및 주차장 677.6㎡

건축시설 건물 1동

구조 : 철근 콘크리트조, 병용계

층수 : 지상 3층, 지하 1층, 옥탑 1층

면적 : 지하 1층 : 1,971.20㎡

지상 1층 : 1,612.76㎡

지상 2층 : 1,612.76㎡

지상 3층 : 1,612.76㎡

옥탑 98.71㎡

계 6,908.19㎡

분양대상토지 : 서울특별시 중구

신당동 217-9, 동 217-43,

동 217-53, 동 217-54,

동 217-55, 동 217-57,

동 217-58, 동 217-59,

동 217-70, 동 217-71,

동 217-72, 동 220, 동 220-2,

동 220-3, 동 220-8,

동 220-9, 동 220-10,

동 220-11

계 18필지

분양대상제외 토지 및 건축물 :
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

217-42, 동 217-52,

동 217-56, 동 217-100,
 동 220-22
 제 5번지
 토지 및 동지상과 분양대
 상토지지상건축물 일체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2 호
 도시계획시설(수도)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수도)

○ 결정조서

알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
 계획법 제 12조 및 건설부 고시
 제 41 호(77.3.16) 권한위임 사항에
 의거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 2과 및 수원과와 관할구청 도시
 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
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21
 서울특별시장

구분	시 설 명	위	치	면	적	비	고
신	설	수도(김포)	강서구 신월동 산68와 3일대	153,510	㎡	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 끝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3 호
 도시계획사업(공용의청사)
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(78.3.7)로 시설(공용의 청사)결정 및 지적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25 조, 제 26 조 및 건설 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 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22
 서울특별시장

1) 사업시행지 : 동대문구 신월동 97-5,6,11
 2)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사업(공용의청사:동대문구청사부지)

- 3) 사업시행면적 : 253.8평
- 4)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(동대문구청장)
- 5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가. 착수년월일 : 인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
나. 준공예정일 : 1959.5.31
- 6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,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 (별첨생략)
- 7)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 (별첨생략)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

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 호 (79.2.3) 로 지적 승인된 당시 도봉구 창동 720-2 의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사업 시행 허가하고 고시한다.
- 2.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
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23

서울특별시

- 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20-2
- 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, 조흥운수 (주) 주차장
- 3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 1,174
- 4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134-39 호 조흥운수 (주) 김 계 인
- 5. 사업의 착수예정일 : 허가일로부터 7 일 이내
준공예정일 : 착공일로부터 90 일 이내
- 6.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명칭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권
창동	720-2	담	1,174	김영일의 1인

- 7. 사업계획 명면도 및 공사내역도 첨부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5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- 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

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 권한위임사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7 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고양군청 및 판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23
서울특별시장

가. 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광로		24	40	18,500	방화동 강변 (대 2-41)	신도면 효자리 (대 3-57)	지속리 - 삼송리 간 1250 위치변경
변경	"	"	"	"	"	"	"	"
기정	대로	2	50	19.4	4,350	왕십리 광장	도 산 로	삼표골제부근 550 구간 확장
변경	"	"	"	19.4 -40.80	"	"	"	"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26 호

도시계획시설 (공공공지)
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공공공지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에

0 시설조서

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판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시인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23
서울특별시장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공공공지	판악구 사당동 363 부근	6,600	

별첨 도면표사와 같음 (도면생략) 함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9 호

주택개발사업건축
계획공람 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136 호 (75.8.25)
서울시고시 제 213 호 (76.9.4)
제 91 호 (77.4.1) 및 제 340 호
(77.9.23)로 주택개발 재개발사
업 실시계획 인가된 지역 1. 3. 용
암 2. 옥석 2. 현저 3. 상도 8. 옥수
1. 2. 청량 3. 마천 1, 2, 3 구역에
대하여 주택개발 추진에 관한 입
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제 33 조
의 2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
계획서를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
개발과에 비치하고 건축법 시행령

제 152 조 제 3 항에 의거 공고일로
부터 14 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
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
다.

1979. 3. 10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77 호

연로사용기기제조업허가취소

열관리법 제 17 조 규정에 의거
연로 사용기기 제조업 허가물 다음
과 같이 취소하고, 동법 시행규칙
제 20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
한다.

1979. 3. 14

서울특별시장

다

을

허가 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허가품목	위반 내용	처용 번호
167	도원 산업사	이재희	마포구 공덕 동 253-17	1. 석유난로 2. 석유풍로	이심고 폐지	열관리법제 16 조; 항 위반, 동 제 17 조 3 호 적용
68	유진 공업사	백부부	성동구성수동 2가 309-130	수평형 로우 터리식 버너	'	'

허가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허가품목	위반내용	적용법조
188	성우보일러공작소	이철규	영등포구 신도림동 389-4	구멍탄용은수보일러	미신고폐지	열관리법제 16조 1항위반, 동제 17조 3호 적용
181	미광기재공업(주)	신외균	영등포구 신도림동 296-103	은수보일러 2종	.	.
166	신속공업사	유정규	영등포구 양평동 3가 5-2	구멍탄용은수보일러	.	.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78 호

품질검사결과불합격 상품수거 또는 수거파기명령(처분)공고

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의거 품질검사 결과 불합

격 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 또는 수거파기 명령(처분)하였기 동법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함.

1979. 3.14

서울특별시장

1. 처분대상 업체 및 품목

업체명	소재지	품명	규격	불합격항목	처분내용
고성공작소	영등포구당산2동 104-10	주철 10kg/cm ² , 플랜지식 게이트 밸브	75%	패킹실깊이, 나사부깊이누설, 미표시	수거 및 파기명령
신용밸브공업사	영등포구문래동 2가 42	주철 10kg/cm ² , 플랜지식글로우보밸브	70%	패킹실깊이누설, 미표시내압시험	.
산진정공사	강서구동촌동 304-3	주철 10kg/cm ² , 플랜지식앵글밸브	25%	패킹실깊이 내압시험누설	.

업체명	소재지	품명	규격	불합격항목	처분내용
일영공업사	용산구 원효로 2가 86-13	청동 10kg/cm ² 나사식양극밸브	32%	나사부 누설미표시	수거 및 파기명령
신한밸브공 업사	관악구 상도동 323-15	청동 10kg/cm ² 나사식양극밸브	20%	패킹실질이누설. 미표시 나사부	"
한일밸브공 업사	용산구 이촌동 212-17	"	25%	패킹실질이누설 내압시험 나사부 미표시	"
삼성철타	종로구 장사동 233	자동차용오일 여과기	시보래 8톤	강도	"
장영실업	강서구염창동27-36	"	포니	미표시	수거명령
서일산업사	" 20-98	"	마크IV	"	"
서울철타 공업	중구 충무로 4가 108-2	"	포드 20마	"	"
한국철타	종로구 관수동 78	"	후소	"	"
기아서비스 (주)	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6-3	"	브리샤	"	"
용광실업	영등포구 독산동 157-2	"	"	"	"

2. 수거 및 파기기간 : 79.3.15 ~ 79.4.3 (20 일간)

3. 처분사유 :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미달 및 위반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79 호
 영동제 1 지구 및 영동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공람공고

1. 당사에서 시행중인 영동 제 1 지구 및 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양재동 일대와 방배동 일대는 농지보존시책 및 사업시행과 관련 구획정리 사업을 유보한 지역으로 건설부고시 제 147 호 (78.6.15)로 토지구획정리 사업구역변경(계획)되었기. 동 지역의 계획 및 일부 공공시설의 합리적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 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코자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79. 3.17
 서울특별시장

* 사업계획변경 안내 *

지구명	당 초		변 경
	시행면적	시행면적	
영동제 1 지구	5,128,091 평	3,853,194 평	영동 1 지구내 양재동 일대 계획 (1,274,897) 및 일부 공공시설변경
영동추가지구	567,433 평	263,119 평	영동추가지구내 방배동 일대 계획 (304,314) 및 일부 공공시설변경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80 호
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허가 준공

1.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준공은 도시계획법 85 조 및 동법 제 57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. 관계 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3.16
 서울특별시장

<p>1)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 47-1 외 6 필지중 (화곡동 산 47-15 공원제외)</p> <p>2) 사업명 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</p> <p>3) 준공면적 : 16,367 ㎡ (이동전면적) - 18,050 ㎡ (경산면적)</p> <p>4) 사업시행지 : 서울시 성북구 중안동 8번지 245호 이 상 복</p>	<p>5) 사업기간 : 착 공 : 78.9. 4 준공예정일 : 79.3.31 준 공 일 : 79.3.10</p> <p>6) 허가번호및일자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4호 (78.9.4)</p> <p>7) 준공도면 : 별첨도면 (생략)</p>
---	--

가로선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 원	연 장	시 점	종 점	비 고
신 설	소로	3	6 m	50m	화곡동산 47-11 입 산 47-12 입	화곡동산 47-11 입 산 47-12 입	
				120m	화곡산 47- 1 입	화곡산 47-14 입	
				125m	화곡산 47-12 입 산 47-13 입	화곡 29-212	
				140m	화곡산 47-13 입 산 47-14 입	화곡산 47-13 입	
				180m	화곡산 47-15 입	화곡산 47-15 입	
				6-3 m	80m	화곡산 47-15 입	
		4-1.5m	108m	화곡산 47-11 입	화곡산 47-11 입	기 설 도로	

공 원 조 서

구 분	공 원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어린이공원	화곡동 772	539 ㎡	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81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확장)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177 호 (62.12.8) 로 고시된 광희문-홍익국교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에 저촉편입 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 조 및 동법제 34 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의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.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아래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.
3. 관계 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

치하고 토지 및 건물채 소유자와 아래관계인 에게 보인다.

1979.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1. 사업장위치 : 신당동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광희문-홍익국교간 도로확장 공사
3. 사업의규모 : 폭 = 15 연장 = 654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착수 및 준공 예정일 : 인가일로 부터 1979.3.31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다음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와 성명 : 생략

지 번	지 적	건 평	소 유 자	
			주 소	성 명
신당동 295-44	303		성북동 2-33	박 대 성
" 296-37	528		"	"
" 387-50	125		신당동 387-2	김 지 연

지 번	지 적	건 평	소 유 자	
			주 소	성 명
신탄동 387-51	136		신탄동 387-2	김 지 연
• 403-72	27		•	•
• 391-35	71	14	• 391-11	한 춘 실
• 391-37	66		• 391-13	강 한 성
• 391-3	102	14	• 391-3	이 경 성
• 390-54		22	•	•
• 391-40	32	8.75	• 391-15	최 목 열
• 392-4	62.8	15	• 26-20	김 우 수
• 391-31	40	8.64	• 391-2	이 북 자
• 387-49	42		• 387-20	하 정 순
• 391-38	34	5.8	• 387-28	김 귀 화
• 236-573	22		• 236-338	김 수 승
• 387-38	42.97	8	• 387-38	김 사 신
• 391-30	79	10	• 391-1	한 종 익
• 390-60	43		• 67-20	한 정 덕
• 390-36	5	1.33	• 391-12	홍 진 태
• 304-256	52.9		• 304-256	최 순 동
• 304-640	28.76	5.66	시흥.외왕.오선산 51-1	장 형 진
• 304-256	16.52		•	•
• 304-34	83	30.96	신탄동 391-10	지 단 찬
• 390-61	45	10	• 391-3	전 경 성
• 390-62	56		•	•
• 390-63	59		• 391-3	•
• 236-572	37			•

지 번	지 적	전 평	소 유 자	
			주 소	성 명
신당 236-570	63			정 경 성
" 391-39	34	9.26	신당동 391-14	김 수 진
" 236-565	40		" 230-28	최 병 수
" 304-639	33.05	6.67	" 304-639	서 종 열
" 307-35	25		" 307-20	김 찬 실
" 403-71	7		" 403-38	신 동 을
" 304-702	30		강남마천 118-27	김 용 상
" 236-563	33	11	신당동 236-289	이 인 학
" 236-564	72	7	용산용문 38-165	정 덕 자
" 304-704	29	6	신당동 304-645	정 영 일
" 387-42	36.36	13	" 387-42	이 문 섭
" 387-12	36.36	9.58	강남역삼 124-2	박 준 일
" 387-13	40	9.02	신당동 387-13	장 기 덕
" 392-5	49.58	8.64	" 392-5	이 선 용
" 391-33	1		" 390-56	문 종 구
" 390-65	54	10.55	"	"
" 390-64	47	9	"	"
" 307-31	6.61		"	"
" 307-11	26.44	5.0	"	"
" 304-648	26.44	6	신당동 304-649	최 상 의
" 304-649	33.05	5.1	" 304-649	김 덕 진
" 307-20	28.42	5.44	" 307-20	송 인 철
" 387-52	11.2	7	" 387-41	오 순 분
" 387-45	18	2.3	" 387-15	이 원 길
" 307-21	37	9.45	" 307-22	김 천 난
" 236-571	23		" 236-343	심 동 길
" 236-566	32		" 236-344	이 기 순
" 236-575	38		인현동 1가 108	김 지 자
" 236-568	44		신당 236-310	홍 상 길

주소 (소재지)	지적	건평	소유자	
			주소	성명
신당동 307- 7	36	8	신당 236-310	홍상길
" 393- 79	26.44		삼선 1가 208	방관득
" 389- 39	96		포항우현 176-1	은창수
" 236-569	59		신당 236-318	오영분
" 395- 38	0.2		신당동 395-2	한영만
" 395-39	13		395-3	조수길
" 236-309	30	4	236-309	김정용
" 304-705	65		벽제.신물리살 20	박복남
" 403- 70	186		신당동 403-2	최정자
" 387- 48	131		성동상정동 66-11	문성인
" 397- 41	55		"	"
" 236-574	6		신당동 236-574	최순덕
" 307- 22	23	7	신당 353-21	최현용
" 307- 20		10.25	" 307-20	이정임
" 304-706	32.5	4	서대문잠안시영 APT	이옥순
" 304-256		8	신당동 304-646	이길순
" 307- 25	19.83	8.86	" 307- 25	김정화
" 307- 32	9.91		"	"
" 304-701	26.44	6	"	"
" 304-703	27	6	신당동 304-256	김종운
" 386-135	9			남현우
" 307- 24	23	7.71	능동 249-38	김순철
" 236-348	106	3	"	"
" 403- 73	7		"	권정자
" 228- 40	33		"	이병순

주소 (소재지)	지적	건평	소유자	
			주소	성명
신당동 228-29	18	12	능동 249-38	이별순
" 228-33	33		"	"
" 228-36	22		"	"
" 228-24	10		"	"
" 304-714	256		능동 304-714	김창열
" 236-577	6		"	오수진
" 236-290	13		"	오경성
" 236-356	11		신당동 236-356	이기순
" 236-308	4		" 236-308	황정순
" 391-32	6		" 391-32	오현욱
" 397-7	15		" 397-7	박순덕
" 304-647	19		" 304-647	이육순
" 304-646	11		" 304-646	박복남
" 304-645	4		" 304-645	정영일
" 304-644	3		" 304-644	김중운
" 304-702	2		" 304-702	김용언
" 236-305	10		" 236-305	김병수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85 호

소공제 1 지구재개발사업
완료범위변경공고

서울시준공 제 451 호 (78.11.17)
로 사업완료된 소공제 1 지구 재개발
사업완료 범위를 도시재개발법 제 48조

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변경 공표한다.

1979.3.20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중구소공동 87-2
일대

- 2. 사업명 : 소공제 1 지구 재개발사업
- 3. 인가년월일 및 번호 : 76.9.14 서울시
고시제 229 호
- 4. 시행자 : 태평개발주식회사
(대표 권학중)
- 5. 준공면적 : 당초 : 1,389.9 평
변경 : 1,418.9 평
- 6. 변경내역 : 별첨도면
- 7. 변경사유 : 광장 7.5 평 및 주차장
21.5 평 금회개설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86 호

도시계획사업 (공원, 도로,
광장조성) 실시계획공람공고

- 1. 건설부고시 제 64 호 ('78.3.29),
동 제 320 호 ('78.10.25) 및 서
울시고시 제 183 호 ('78.4.28),
동 제 671 호 ('78.2.20), 동
제 681 호 ('78.12.23)로 도시계
획시설 (공원, 도로, 광장조성) 결정
및 지적승인된 바 있는 경기도사
용군과천천원문리, 막계리 2번지의
1,556 필지, 광로 56, 71, 55 호
하리 352 번지 광장발대에 대하여
도시계획사업 (서울대공원 건설) 실

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
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의 2 규
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일반인에게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도서물 과천면회의실 및 서울
대공원건설사업소 공사파에 비치하고
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
인에게 보이게 한다.

3. 본 공고에 대하여 별첨 토지소유
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
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
로 통지해 갈음한다.

1979. 3.

서울특별시장

(공 랑 개 요)

- 가. 사업시행의 위치
 - 1) 경기도시용군과천면막계리 2번지
외 1,556 필지
 - 2) 경기도시용군과천면천원문리, 하리
352 필지
-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
 - 1) 종류 - 공원, 도로, 광장조성
 - 2) 명칭 - 서울대공원 건설
- 다. 사업의 규모
 - 1) 시설구역 - 1,460,176.7 평

2) 도로-광로 56 : 폭 50 미터 - 연
 장 1,450 미터
 광로 71 : 폭 100 미터 - 연
 장 550 미터
 광로 55 : 폭 50 미터 - 연
 장 1,150 미터

3) 광장 - 20,000 제곱미터
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 마. 착공및준공예정일 : '78.7.8 - '86.12
 바. 사용또는 수용할 재산위 소재
 지 : 빌립
 사.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토지
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.
 성명 : 생략
 아. 관계도면 : 생략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87 호
 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품수거및
 파기명령 (처분) 공고
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3 항
 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결과 불합
 격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와
 같이 수거 및 파기명령 (처분) 하였
 기 동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
 하여 이를 공고함.
 1979.3.19
 서울특별시장

1. 처분대상업체 및 품목

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품명	규격	불합격항목	처분내용
포니공업사	강남구내곡동 1-1611	권웅식	삼분차	유아용	구조의관및규격	수거및파기명령
코스모스	성동구자양동 469-8	오동욱	완구	피아노 오뚜기	소비량	"

2. 수거및파기기간 : 79.3.20 -
 79.4.8 (20 일간)
 3. 처분사유 : 공산품 품질검사 기
 준미달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92 호
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제
 획공률및관리처분계획 (변경) 공람공고
 1. 건설부고시 제 18 호 (75.2.8) 및

서울시고시 제 210 호 (76.9.4) 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한 옥인 및 현저 3 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42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하고 옥인구역의 서울시공고 제 225 호 (75.9.25) 및 현저 3 구역의 서울시공고 제 307 호 (78.7.19) 로 공담공고된 내용은 변경 하였으며

3. 옥인구역의 건축계획은 (현저 3 구역은 현재공담중)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2 규정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옥인 및 현저 3 구역의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공담에 공한다.

4. 본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개별 통지할 것이나 관계도시는 서울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에 비치, 열람하고 있다.

1979.3.22
서울특별시장

5. 공고내역

지구명	위 치	관리처분면적	비 고
옥인 구역	산 1-35 번지일대	18,550 평	지번별조서및도면생략
현저 3	현저동 7	44,074 "	"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94 호

관리계획일부변경인가및관리예정지변경지정공고

1. 암사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

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공고 제 36 호 (79.2.8) 로 공담공고한 바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결정의 효력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

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일부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 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판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 것이나, 미수령 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공고로 갈음한다.

1979. 3

서울특별시장

(환지예정지 변경내역)

가. 사업명 : 암사토지구획정리 사업

나. 변경위치 : 천호동 346 와 9호의 18필

다. 변경면적 : 820.90 평

◎ 강서구공고제 20 호

공인개각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동장직인을 개각하였음을 동조례 제 9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

1979.3.12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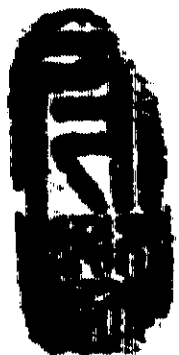

1. 개각사용년월일 : 79.3.16

2. 개각된공인 : 열창동장의 직인

3. 개각공인인명 : 별첨

공 인 의 인 명

인 영		인 영	
공 인 명	열 창 동 장 제 각 인	공 인 명	열 창 동 장 개 각 인

<p>◎ 강서구 공고제 30 호</p> <p>공인계각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장직인 및 개인을 계각 하였음을 동조례 제 9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</p>		<p>1. 계각사용년월일 : 1979.3.21</p> <p>2. 계각된공인 : 화곡제 2 동장의 직인 및 개인</p> <p>3. 계각공인인명 : 별첨</p> <p>1979.3.19</p> <p>서울시 강서구청장</p>	
공 인 의 인 명			
인		인	
명		명	
공인명	화곡제 2 동장계각인	공인명	화곡제 2 동장계각인
정 정		<p>내용중 오류사항을 다음과같이 정정한다.</p> <p>1979.3.19</p> <p>서울특별시관</p>	
<p>시보 제 697 호(79.2.2)로 게재된</p>			
구분 및 명칭	페이지	오류사항	정정
조례제 1304호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	20-3	별표중 종별 다량오물 (50명초과 영업소) 1톤까지의 해당금액 1,500 원	2,000원